

2022년 상반기

건설현장 민·관 합동 기동감사 결과 보고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2022년 상반기 건설현장 민관 합동 기동감사 결과

도내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정착과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 기동감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제6조

1 감사실시 개요

- (기간) 2022. 5. 26.(목) ~ 6. 10.(금) 10일간
- (대상) 8개* 시·군, 16개소¹⁾(시·군 15, 민간보조 1)
 - 5억 원 이상 334개소(시·군 321, 민간 13) 중 준공예정일, 공정률 등 고려
- * (시·군당 2개소) 여수, 순천, 담양, 보성, 화순, 강진, 해남, 영광
- (감사반) 2개 반 20명 - (총괄) 기술감사팀장
 - (1반) 감사관 2, 민간감사관 1 / (2반) 감사관 2, 민간감사관 1
 - (민간전문 감사관) 총 20명 중 15명 분야별 참여

2 감사 중점사항

- (설계도서) 건설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적정성, 공사원가 산정 및 설계변경 사항, 주요 자재 반영 적정 여부 등
- (시공·품질·안전관리) 계획공정의 적정성, 주요 구조물 시공 상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실행 상태 등
- (현장관리 등) 현장기술자 배치 및 근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 의무사항, 하도급 관리 등
- (민간전문가 참여)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자문 실시

1) 도로(2), 하천(3), 건축(4)-민간보조(1) 포함, 상·하수도(3), 해양(1), 농업기반(2), 관광(1)

3 감사 결과

【총 평】

○ (민·관 합동 기동감사 실시) 금번 기동감사는 5억 원 이상 시·군에서 시행한 15개 사업과 3억 원 이상 민간보조 1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 감사관’ 15명이 참여하였음

- ▶ (예산 낭비 사전 예방) 사업장별 시공·품질·안전관리 전반적인 사항과 부당한 설계변경 여부 등을 중점 점검
- ▶ (건설시공 정착과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사업 시행과정에서 부실·조잡 시공이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감사를 실시

○ (도 신뢰도 향상 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민간전문가와 청취하여 분야별 자문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에 노력하였음

* 시공·품질·안전과 예산 등 공사 추진과 관련된 사항

【처분 요구사항】

(단위 : 건, 명, 백만원)

총계 (가:나)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D)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계 (A =a+b)	재정상 처분(백만원)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소계 (a)	회수	감액	재시공	보완 시공				
27	2 (2명)	- -	2 (2)	25	16 (601)	16 (601)	- -	16 (584)	(2) (17)	- -	-	8	-	1

* 공무원 2명(강진 1, 해남 1)

4 처분 목록

구분 연번	대상 기관	제 목	조치계획(안)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계	8 개 시·군	지적 16건 / 처분건수 27건	훈계 2	시정 16 주의 8 통보 1	16건 감 액 584,0781 재시공 7,389

구분 연번	대상 기관	제 목	조치계획(안)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1반		지적 8건 / 처분건수 12건	훈계 1	시정 8 주의 3	8건 감 액 316,895 재시공 3,000
1	보성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41,236 재시공 3,000
2	"	○○항 어촌뉴딜300사업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48,231
3	강진	○○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주의 1	감 액 4,104
4	"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1	시정 1 주의 1	감 액 49,568
5	순천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63,100
6	"	○○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주의 1	감 액 24,321
7	영광	○○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48,117
8	"	○○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38,218
2반		지적 8건 / 처분건수 15건	훈계 1	시정 8 주의 5 통보 1	8건 감 액 267,183 재시공 14,389
1	화순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주의 1	감 액 24,219
2	화순 (민간보조)	○○센터 구축사업(민간보조)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53,567
3	여수	○○○○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 주의 1	감 액 87,567
4	"	○○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23,539
5	해남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1	시정 1	감 액 21,789
6	"	○○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 주의 1 통보 1	감 액 8,804 재시공 14,389
7	담양	농어촌 생활용수(○○지구)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주의 1	감 액 27,698
8	"	○○면 ○○○○○○센터 건립사업 부적정		시정 1 주의 1	감 액 20,000

5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1반-8건 】

① [보성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 보성군(안전건설과)은 '19. 12.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9,276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22. 6. 10. 감사일 현재 축제공 시공 확인을 위해 설치한 수평기준틀 45개소 중 36개소가 망실되어 재설치(300만원)가 필요한데도 미조치
 - 또한 호안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합판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유로폼 시공 등*으로 4,124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시공상세도 미작성, 준공표지판(화강암) 설치 제외

<< 확인서에 대한 보성군 의견 >>

본 건과 관련한 확인서에 대하여 보성군은 별도 의견 없었음

📁 과다 계상된 사업비 4,124만원 감액하고 망실된 수평기준틀 36개소를 재설치 (300만원) 하도록 "시정요구"

② [보성군] ○○항 어촌뉴딜300사업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 ☐ 보성군(안전건설과)은 '20. 12.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항 어촌뉴딜300사업 정비공사(7,538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22. 6. 10. 감사일 현재 확폭잔교공 연결 거꾸집이 합판에서 유로폼으로 시공하였고, 강관파일 정산 등*으로 4,823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강관파일(1,757→1,602m, △155m)

« 확인서에 대한 보성군 의견 »

본 건과 관련한 확인서에 대하여 보성군은 별도 의견 없었음

☞ 과다 계상된 사업비 4,823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3 [강진군] ○○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 강진군(건설과)은 '20. 11.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지구 배수 개선사업(3,566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과)은 시공 이음면 정리(콘크리트치핑, 기계) 미시공으로 41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 제5조 등에 발주청은 수행사업의 특성 및 필요한 소요인력 역량 검토 후 사업관리방식(책임감리, 시공감리, 직접감독)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과)은 '22. 6. 10. 감사일 현재 '○○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전에 사업특성 및 역량평가 등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관리방식 중 책임감리로 선정 후 용역 수행

« 확인서에 대한 강진군 의견 »

본 건과 관련한 확인서에 대하여 강진군은 별도 의견 없었음

☞ 과다 계상된 사업비 410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시 사전에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등을 검토한 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주의요구"

4 [강진군]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 4.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4,379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22. 6. 10. 감사일 현재 관로 터파기 폭이 설계보다 적게($B=0.3 \sim 0.5m$) 시공되었고, 사토 운반거리($L=5.0km \rightarrow 2.3km$) 조정 등으로 4,957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 제4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관계 서류도 작성·비치·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22. 6. 10. 감사일 현재 검측대장 등의 서류 작성 미비로 업무수행 소홀
 - 위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시공자는 반입 자재를 변질, 손상, 오염, 뒤트림, 변색 등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공사의 시공자는 건설자재를 정리·정돈하지 않고, 현장 주변도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

« 확인서에 대한 강진군 의견 »

본 건과 관련한 확인서에 대하여 강진군은 별도 의견 없었음

- ☞ 건설공사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現 업무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 과다 계상된 사업비 4,957만원을 감액하고, 현장을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고, 반입 자재 등을 잘 보관하도록 **"시정요구"**
- ☞ 앞으로 공사감독자가 단계별 검측하고 관계 서류 작성·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⑤ [순천시]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순천시(도로과)는 '14. 12.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간 도로개설공사(8,621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도로과)는 '22. 6. 10. 감사일 현재 도로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 합판거꾸집 미설치 등*으로 6,31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비탈면보호공 공법 변경(줄때, 평때 → 거적덮기 써드스프레이)

« 확인서에 대한 순천시 의견 »

본 건과 관련한 확인서에 대하여 순천시는 별도 의견 없었음

☞ 과다 계상된 사업비 6,310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⑥ [순천시] ○○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 순천시(건설과)는 '20. 6.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4,351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건설과)는 '22. 6. 10. 감사일 현재 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공제량 과소 계상, 제방 흙쌓기 콤팩트 다짐 미시공 등으로 2,021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건설과)는 '22. 6. 10. 감사일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신호수 노임 등으로 집행한 411만원 정산이 필요한 데도 미조치

« 확인서에 대한 순천시 의견 »

본 건과 관련한 확인서에 대하여 순천시는 별도 의견 없었음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432만원을 감액 및 정산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공사감독자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7 [영광군] ○○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 영광군(건설과)은 '20. 10.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지구 배수 개선사업(4,250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과)은 '22. 6. 10. 감사일 현재 배수장 벽체 스페이스 미설치, 소운반(레미콘, 철근) 미설시 등*으로 4,692만원 감액이 필요한 데도 미조치
 - * 공사 중 안전시설공 일부 미설치(3회 중 2회), 정재하시험 미설시(2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과)은 '22. 6. 10. 감사일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PE드럼, 쏠라전멸등으로 집행한 120만원 정산이 필요한 데도 미조치

« 확인서에 대한 영광군 의견 »

본 건과 관련한 확인서에 대하여 영광군은 별도 의견 없었음

☞ 과다 계상된 사업비 4,812만원을 감액 및 정산하도록 "시정요구"

8 [영광군] ○○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영광군(건설과)은 '18. 5.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센터 진입로 개설공사(2,931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과)은 '22. 6. 10. 감사일 현재 현지여건 상 법면 보호공이 필요 없는 구간 제외, 타 사업으로 인한 아스콘 포장 중복 등*으로 3,822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사토 운반비(덤프 운반거리, 사토장 정리비 제외) 조정, 시공상세도 미작성

« 확인서에 대한 영광군 의견 »

본 건과 관련한 확인서에 대하여 영광군은 별도 의견 없었음

☞ 과다 계상된 사업비 3,822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2반-8건 】

① [화순군]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 화순군(환경과)은 '19. 11.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6,959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과)은 '22. 6. 10. 감사일 현재 하천생태 정비 및 기존보 보강 시 가물막이를 위한 톤마대(2,649m³) 운반 품 과다, 생태수로 흙깎기(2,675m³) 중복 등으로 2,422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 등에 공사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검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과) 공사관리관은 '19. 11. 5.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기성·준공검사 4회 중 4회 모두 입회하지 않고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 건설공사 총괄업무 소홀

« 확인서에 대한 화순군 의견 »

본 건과 관련한 확인서에 대하여 화순군은 별도 의견 없었음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422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입회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② [화순군] ○○센터 구축사업(민간보조) 추진 부적정

- 화순군(일자리정책실)은 '20. 10. 20. 재단법인 ○○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는 '21. 7.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센터 구축사업(5,962백만원)을 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시설공사비 지급 시 감독 공무원이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일자리정책실)은 '22. 6. 10. 감사일 현재 토사 운반 거리 미정산(10km → 3.1km), 임목 폐기물 부존재 등*으로 4,639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1층 장애인 화장실 조적벽 높이 변경(5.85 → 4.08m)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에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보조사업자(○○센터)는 '22. 6. 10. 감사일 현재 안전관리비 집행 증빙자료 중 (주)○엔지니어링 등 2개사에서 535만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하였는데도 미정산
- 「공공하수도설치사업 업무지침」에 관리청은 하수관거공사 시 CCTV 검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보조사업자(○○센터)는 '22. 6. 10. 감사일 현재 도급 공사비에 포함된 하수관거 CCTV 검사 및 수밀검사비(183만원)를 감액하고 별도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확인서에 대한 화순군 의견 »

본 건과 관련한 확인서에 대하여 화순군은 별도 의견 없었음

☞ 과다 계상된 사업비 5,357만원을 감액 및 정산하도록 "시정요구"

③ [여수시] ○○○○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 여수시(하수도과)는 '20. 7.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 하수관로 정비공사(14,509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하수도과)는 '22. 6. 10. 감사일 현재 ○○아파트 인근 하수관로 설치 구간 1,302m의 도로굴착 폭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1.59m → 1.20m) 하여 1,055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등에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품질관리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하수도과)는 '20. 8. 31. 품질시험계획을 승인 통보하면서 설계서와 품질시험계획서의 품질관리비가 다른데도 조정하지 않아 7,701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 등에 발주청 소속 직원은 기성검사를 입회하여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검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하수도과) 공사관리관은 '21. 12. 14. 실시한 기성 검사를 입회하지 않고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 건설공사 총괄업무 소홀

« 확인서에 대한 여수시 의견 »

본 건과 관련한 확인서에 대하여 여수시는 별도 의견 없었음

☞ 과다 계상된 사업비 8,756만 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기성검사에 입회하여 입회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4 [여수시] ○○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 여수시(체육지원과)는 '21. 1.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 건립사업 (3,743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체육지원과)는 '22. 6. 10. 감사일 현재 조립식 가설 울타리 일부(53.2m) 미시공 등*으로 2,039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규준틀 미시공, 강관말비제 설치 및 해체 미실시, 터파기 여유폭 부족분 조정
- 「공공하수도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관리청은 하수관거 공사 시 CCTV 검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체육지원과)는 '22. 6. 10. 감사일 현재 도급 공사비에 포함된 하수관거 CCTV 검사 및 수밀검사비(315만원)를 감액하고 별도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확인서에 대한 여수시 의견 »

본 건과 관련한 확인서에 대하여 여수시는 별도 의견 없었음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354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5 [해남군]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해남군(관광실)은 '21. 3.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공원 조성 사업(2,816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실)은 '22. 6. 10. 감사일 현재 보차도 및 녹지·재료분리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타설 시 합판거푸집(767㎡) 일부 미시공 등*으로 2,179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우수공 집수정 35개소 설치방법 변경(현장타설→기성품 설치)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는 적절한 시험실을 설치하고 기술인을 배치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실)은 '22. 6. 10. 감사일 현재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를 승인 통보하지 않아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미확인 등 품질관리 업무 소홀

« 확인서에 대한 해남군 의견 »

본 건과 관련한 확인서에 대하여 해남군은 별도 의견 없었음

- ☞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現 업무 담당자 1명 "훈계요구" 조치
-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17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⑥ [해남군] ○○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 해남군(산림녹지과)은 '21. 12. 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 신축공사(1,609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산림녹지과)은 '22. 6. 10. 감사일 현재 기준틀 미시공, 중복 계상된 폐기물처리비 미정산으로 88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건축법」 제41조 등에 건축물이 1층인 경우 석축의 윗가장자리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는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
 - 그런데 설계·감리 수행 건축사는 '22. 6. 10. 감사일 현재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변경(1.0m → 1.5m 이상)하도록 지도하지 않았고, 위 군(산림녹지과)은 설계변경과 전석쌓기에 대해 재시공(1,439만원) 미조치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 설치 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으로 설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건축사는 '22. 6. 10. 감사일 현재 작업발판을 일체형 작업발판으로 설계 변경하도록 지도하지 않았고, 위 군(산림녹지과)은 일반 재래식 강관비계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

« 확인서에 대한 해남군 의견 »

본 건과 관련한 확인서에 대하여 해남군은 별도 의견 없었음

- ☞ 과다 계상된 사업비 880만원을 감액하고 전석쌓기를 재시공(1,439만원) 하도록 "시정요구"
- ☞ 앞으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시스템 비계를 적용하도록 "주의요구"
- ☞ 건축사법에 따라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건축사를 전라남도 건축사징계 위원회에 징계 요청하도록 "통보"

7 [담양군] 농어촌 생활용수(○○지구)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담양군(물순환사업소)는 '20. 6.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농어촌 생활용수(○○지구) 개발사업(2,170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물순환사업소)은 '22. 6. 10. 감사일 현재 송수관로 되메우기 (1,948m³) 시 램머 다짐 장비 미사용 등*으로 2,769만원 감액이 필요한 데도 미조치 * 가설사무실 및 적치장 임대료 정산 미 실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 등에 발주청 소속 직원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여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검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물순환사업소) 공사관리관은 '20. 9. 28.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한 기성·준공 검사 2회 중 2회의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 건설공사 총괄업무 소홀

« 확인서에 대한 담양군 의견 »

본 건과 관련한 확인서에 대하여 담양군은 별도 의견 없었음

-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769만 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 앞으로 기성검사에 입회하여 입회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8 [담양군] ○○면 ○○○○○○○센터 건립사업 부적정

- 담양군(자치행정과)은 '21. 7.부터 '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면 ○○○○○센터 건립사업(1,894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자치행정과)은 '22. 6. 10. 감사일 현재 건축물 기초 터파기 후 되메우기 시 램머 다짐 장비 미사용, 콘크리트 살수 미실시 등*으로 공사비 2,00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규준틀 미시공, 지붕공사 자재운반 크레인 중복, 잔디 식재(평떼→줄떼)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에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고 기성 지급 시 사용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자치행정과)는 '22. 6. 10. 감사일 현재 건설사업자가 1회 기성을 청구하면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제출하도록 지도 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확인서에 대한 담양군 의견 »

본 건과 관련한 확인서에 대하여 담양군은 별도 의견 없었음

-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 앞으로 기성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하도록 "주의요구"

【 처분요구서 】

목 차

【1반-8건】

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9
② ○○항 어촌뉴딜300사업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23
③ ○○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26
④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시정, 주의) ..	30
⑤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35
⑥ ○○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38
⑦ ○○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42
⑧ ○○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47

【2반-8건】

①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51
② ○○센터 구축사업(민간보조) 추진 부적정(시정)	55
③ ○○○○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61
④ ○○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67
⑤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시정)	71
⑥ ○○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통보)	76
⑦ 농어촌 생활용수(○○지구)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82
⑧ ○○면 ○○○○○○센터 건립사업 부적정(시정, 주의)	86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보성군(안전건설과)

내 용

1. 업무개요

보성군은 침수, 고립 등 복합적인 재해위험요인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2019. 12. 27. 부터 2022. 5. 27.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과 같이 건설공사 시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등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축제 4.78km 교량 5개소 보 7개소 등	20,374	9,276	11,098	2019.12.27. ~ 2022.07.25.	○○건설(주) 외 1개사 ¹⁾ (○○○)	건설 공사
○○외 1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30개월	1,825	1,825	-	2020.01.31. ~ 2022.08.17.	(주)○○○○기술 외 1개사 ²⁾ (○○○)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자료 : 보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1) ○○건설(주)(○○○ 51%), ○○○종합건설(○○○ 49%)

2) (주)○○○○기술(○○○ 70%), (주)○건설(○○○ 30%)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성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성군(안전건설과)은 2022. 5. 27. 감사일 현재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설계도서에 반영된 축제공의 수평기준틀 45개소 중 36개소가 망실되었는데도 재설치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41,236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3건	-	168,109	-	126,873	△41,236
1	시공상세도 미작성	1식	10,829	-	-	△10,829
2	준공표지판(화강암) 설치 제외	1개	3,499	-	-	△3,499
3	호안 기초콘크리트 (합판거푸집→유로폼) 시공	3,434㎡	85,534	3,434㎡	69,909	△15,625
	제비울	-	68,247	-	56,964	△11,283

자료 : 보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기술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망실된 수평기준틀 재설치 및 과다 계상된 41,236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수평기준틀 망실에 따른 시공 기준면 확인 불가 및 과다 계상된 공사비 41,236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보성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보성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41,236,000원 감액 조치 및 망실된 수평기준틀을 재설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항 어촌뉴딜300사업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보성군(해양수산과)

내 용

1. 업무개요

보성군은 회천면에 위치한 ○○항 배후부지 확장 등을 통한 어민 편익 향상을 위하여 2020. 12. 29.부터 20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용역명)	사업량	사업비(용역비)			사업(용역)기간	도급(용역)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항 어촌뉴딜300사업 정비공사	확폭잔교 3,602㎡ 건축 등 1식	8,389	7,538	851	2020.12.29. ~2022.11.18.	○○건설(주) 외 1개사 ¹⁾ (○○○)	건설 공사
○○항 어촌뉴딜300사업 (○○항, ○○항)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2개월	1,091	1,091	-	2020.12.17. ~2022.10.14.	(주)○○ 외 1개사 ²⁾ (○○○)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자료 : 보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1) ○○건설(주)(○○○), ○○토건(주)(○○○)

2) (주)○○(○○○ 60%), (주)○○○○○건축사사무소(○○○ 4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성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성군(해양수산물)은 2022. 6. 10. 기동감사일 현재 [표 2] “건설공

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한 공사비 48,231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3건	-	510,397	-	462,166	△48,231	
1	확폭잔교공 연결부 거푸집 (합판→유로폼)	1,073㎡	49,819	1,104㎡	44,382	△5,437	
2	강관파일	1,757m	376,869	1,602	343,515	△33,354	
3	고철처리	-	-	15.776ton	△3,443	△3,443	
	제경비	1식	83,709	1식	77,712	△5,997	

자료 : 보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는 공사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48,231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확폭잔교공 연결부 거푸집 변경 및 강관파일 등 실제 시공 물량과 상이한 과다 계상된 공사비 48,231천원이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보성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보성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48,231,000원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강진군(건설과)

내 용

1. 업무개요

강진군은 2020. 11. 9.부터 2022. 5. 31.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과 같이 건설공사 시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등			
○○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장 1개소 배수로 1.5km 복토 7.4ha	5,791	3,566	2,225	2020.11.09. ~ 2023.12.20.	(주)○○종합 건설 (○○○)	건설 공사
○○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36개월	413	413	-	2020.10.08. ~ 2023.09.22.	(주)○○공사 외 1개사 ¹⁾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자료 : 강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조 등에 따르면 발

1) (주)○○○○공사(○○○ 80%), 주식회사 ○○(○○○ 20%)

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한 후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주청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에 대한 발주청의 역량을 검토한 후 사업관리방식의 순차적 검토²⁾를 통하여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³⁾에 맞는 사업관리방식을 배정⁴⁾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강진군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등 사업관리방식을 검토한 후 적합한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진군(건설과)은 2020. 10. 29. 계약체결 후 2022. 5. 31. 감사일 현재까지 ‘○○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사전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관리방식의 적합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여 행정에 신뢰를 저해하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3.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

-
- 2) 1.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2.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배정, 3. 사업관리방식 배정에 따른 총 소요인력 산정, 4. 소요인력과 가용인력 비교 후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조정, 5. 사업별 최종 사업관리방식 확정
- 3) 공사특성(30%), 사업여건(25%), 공사수행방식(15%), 발주청 역량(30%) 평가하되,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배점기준을 10% 이내에서 조정 적용
- 4) 평가점수(총점) 80점 이상: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다), 평가점수(총점) 50점 이상: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평가점수(총점) 50점 미만: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진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진군(건설과)은 2022. 5. 31. 감사일 현재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4,104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1건	-	4,104	-	-	△4,104	
1	시공이음면정리 미시공 (콘크리트치핑, 기계)	118㎡	2,653	-	-	△2,653	
	제경비	-	1,451	-	-	△1,451	

자료 : 강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공사 소속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은 공사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4,104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4,104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 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강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강진군수는

-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4,104,000원 감액 조치하고,(시정)
-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업관리방식의 적합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 사업관리용역 수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

훈 계 대 상 자 강진군 ○○○○사업소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강진군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지방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20. 4. 9.부터 2022. 5. 31.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km,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1.0	4,379	2,735	1,644	2020.04.09. ~2022.12.08.	(주)○○건설(○○○), (유)○○건설(○○○)	

자료 : 강진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서기 ○○○은 2022. 1. 1.부터 2022. 5. 31. 감사일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설공사 공사감독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진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2. 5. 31. 기동감사일 현재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49,567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3건	-	1,976,545	-	1,926,978	△49,567	
1	사토 운반거리 미정산	L=5.0km (1,575m ³)	6,598	L=2.3km (1,575m ³)	4,988	△1,610	
2	관로 터파기 시공(3차분)	1,268m ³	439,241	1,033m ³	419,460	△19,781	포장 깨기
3	콘크리트 깨기 및 복구 미시공 (안지마을 A Line)	1,556m	748,162	1,316m	742,187	△5,975	
	제경비	1식	596,497	1식	582,166	△14,331	
	관급자재(레미콘 등)	1식	186,047	1식	178,177	△7,870	

자료 : 강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관로 터파기 등 실제 시공 물량과 상이한 과다 계상된 공사비 49,567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공사감독자 및 시공자 작성·비치 서류 미비 및 확인 업무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업무수행지침 제115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감독일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민원처리부, 검측대장, 재해 발생현황,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단속·점검방문 실명제 기록부를 작성 또는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업무수행지침 제116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검사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품질시험·검사실적 보고서, 현장교육 실적부,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현황,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주요자재 수불부 및 검사부,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공사측량성과, 안전보건 관리체제, 공사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도표를 검토 확인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진군 공사감독자는 공사감독자의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시공사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 등 15가지의 서류를 검토·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 공사감독자는 2022. 5. 31. 기동감사일 현재 공사감독자가 감독일지 및 검측대장 등의 서류 작성이 미비하여 주요 공정이 설계 및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등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사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현장 자재정리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위 공사의 「공사시방서」 제1장 1-3 1.5에 따르면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공사시방서 1.21.에 따르면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의 시공자는 반입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공사구역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공사의 시공자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품질에 영향이 없도록 자재를 보관하고, 공사구역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건설자재 등이 정리정돈 되어 있지 않고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지 않은채로 보관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등이 정리 정돈되지 않고 너저분하게 흐트러져 있어 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강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강진군수는

- ①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지방○○서기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49,567,000원 감액 조치하고,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반입 자재를 품질에 영향이 없도록 보관하는 등 공사구역을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며(시정)
-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순천시(도로과)

내 용

1. 업무개요

순천시는 도심 및 조례사거리로 유입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2014. 12. 3.부터 2022. 6. 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등			
○○~○○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662m	19,893	8,621	11,272	2014.12.03. ~ 2022.12.31.	○○건설(주) (○○○)	

자료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등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

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설계도면 및 공사 지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시(도로과)는 2022. 6. 3. 감사일 현재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시공 방법 변경에 대한 공사비 63,100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2건		107,200		44,100	△63,100
1	도로경계석 기초 레미콘 타설 시 합판거푸집 미설치	910m	8,556	910m	4,829	△3,727
2	비탈면보호공 변경 (줄때, 평때→거적덮기+씨드스프레이)	7,734㎡	54,268	7,734㎡	25,808	△28,460
	제비율	1식	44,376	1식	13,463	△30,913

자료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63,100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순천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63,100,000원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순천시(건설과)

내 용

1. 업무개요

순천시는 ○○천의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2020. 6. 26. 부터 2022. 6. 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2.2	6,729	4,351	2,378	2020.06.26. ~2023.06.15.	○○토건(주) (○○○)	

자료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등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시(건설과)는 2022. 6. 3. 기동감사일 현재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20,211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3건	-	47,633	-	27,422	△20,211	
1	고철 공제량 과소 계상	5.975ton	△1,374	27.791ton	△13,423	△12,049	
2	흙쌓기(성토) 제방 타이어로울러 다짐 미실시	9,756m³	19,746	9,756m³	16,477	△3,269	
3	가시설공 SHEET-PILE공 천공후 향타 및 인발 부족 시공	78본 (L=7.58m)	21,656	72본 (L=7.58m)	19,990	△1,666	
	제경비	1식	7,605	1식	4,378	△3,227	

자료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고철 공제 등 실제 시공 물량과 상이하게 계상된 공사비 20,211천원이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1~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86%까지 적용함

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시(건설과)는 [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장비유도 신호수 노임 등’에 대한 정산을 소홀히 하여 4,110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있다.

[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사용불가 대상 금액	비 고
계	3건	4,110	
1	2020년 9월 목적 외 사용(종합계시판 설치비 등)	1,960	
2	2021년 4월 목적 외 사용(장비유도 신호수 노임 등)	1,400	
3	2021년 6월 목적 외 사용(안전헬스 설치 노무비 등)	750	

자료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분 4,110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순천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공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321,000원을 감액 조치하고(시정)
-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영광군(건설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광군은 2020. 10. 16.부터 2022. 6. 8.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과 같이 건설공사 시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등			
○○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장 2개소 배수로 2.6km 등	6,929	4,250	2,679	2020.10.16. ~ 2023.09.30.	○○종합건설(주) (○○○)	건설 공사
○○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38개월	440	440	-	2020.11.16. ~ 2024.01.15.	○○○○○○공사 (○○○)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광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영광군(건설과)은 2022. 6. 8. 감사일 현재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46,917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5건	-	54,203	-	7,286	△46,917	
1	스페이스 미설치	2,541개	6,545	-	-	△6,545	
2	공사중 안전시설공 일부 미설치	3식	15,677	1식	5,225	△10,452	
3	정재하시험 미 실시	2회	9,649	-	-	△9,649	
4	소운반 미 실시 (레미콘)	2,879m ³	5,366	-	-	△5,366	
5	소운반 미 실시 (철근)	273.82톤	3,551	-	-	△3,551	
	제 비 율	1식	13,415	1식	2,061	△11,354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공사 소속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은 공사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46,917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46,917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이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1~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86%까지 적용함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광군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를 제출받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영광군(건설과)은 2022. 6. 8. 감사일 현재 [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과 같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PE드럼, 쏘라전멸등’으로 집행하였는데도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1,200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사용불가 대상 금액	비 고
계	1건	1,200	
1	2022년 3월 목적외사용 (PE드럼, 쏘라전멸등)	1,200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안전관리비 1,200천원을 부당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영광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영광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117,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영광군(건설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광군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과 ○○센터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2018. 5. 24.부터 2022. 6. 8.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센터 진입로 개설사업	1.9	3,568	2,931	937	2018.05.24. ~2023.09.24.	○○종합건설(주) (○○○)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

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광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지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영광군(건설과)는 2022. 6. 8. 기동감사일 현재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38,218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4건	-	189,385	-	151,167	△38,218	
1	법면보호공 삭제 (초류종자살포)	16,883㎡	68,021	13,115㎡	52,840	△15,181	
2	시공상세도 작성비	5장	1,400	-	-	△1,400	
3	사토 운반 정산 (덤프 운반, 정리비 제외)	4,689㎡	17,735	3,233㎡	6,336	△11,399	
4	아스콘 포장 중복구간 삭제	16,285㎡	58,476	15,664㎡	56,268	△2,208	
	제경비	1식	43,753	1식	35,723	△8,030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법면보호공 삭제 등 실제 시공 물량과 상이한 과다 계상된 공

사비 38,218천원이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공사감독자 및 시공자 비치 서류 확인 미흡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업무수행지침 제115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감독일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민원처리부, 검측대장, 재해 발생현황,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 등을 작성 또는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업무수행지침 제116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검사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품질시험·검사실적 보고서, 현장교육 실적부,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현황, 안전관리계획서, 주요자재 수불부 및 검사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도표를 검토·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광군 공사감독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시공사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 등 15가지의 서류를 검토·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영광군(건설과) 공사감독자는 2022. 6. 8. 감사일 현재까지 검측대장, 공사감독일지 등의 서류 작성이 미비하여 주요 공정이 설계 및 지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등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사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영광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영광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공사비 38,218,000원을 감액 조치 및 공사 관련 서류 작성을 보완·확인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환경과)

내 용

1. 업무개요

화순군은 2019. 11. 5.부터 2022. 5. 31.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과 같이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0km	13,168	6,959	6,209	2019.11.05. ~ 2022.11.04.	○○○이엔씨(주) (○○○)	건설 공사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36개월	1,308	1,308	-	2019.11.13. ~ 2022.10.27.	(주)○○ 외 1개사 (○○○)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화순군(환경과)은 2022. 5. 31 감사일 현재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24,219천원을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2건		24,219		-	△ 24,219
1	가물막이 톤마대 운반 품 과다 (하천생태정비, 기존보 보강)	2,649m³	19,977	- m³	-	△ 19,977
2	생태수로 흙깎기 중복 (흙깎기, 절토면 고르기)	2,675m³	4,242	- m³	-	△ 4,242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는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24,219천원을 설계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가물막이 톤마대 운반 품 과다 및 흙깎기와 절토면 고르기 중복 계상된 공사비 24,219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공사관리관 현장 기성·준공검사 미참석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2조 제11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성·준공검사 입회 등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02조 제6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 공사관리관은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준공검사 실시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화순군(환경과) 공사관리관은 2019. 11. 5.부터 2022. 5. 27.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기성·준공검사 4회¹⁾ 중 4회 모두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 공사관리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문제점 파악 등 발주청의 건설공사 총괄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24,219,000원 감액 조치하고,(시정)
- ②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1차분 : 기성 1차(2020. 12. 18.), 기성 2차(2021. 3. 25.), 기성 3차(2021. 12. 07), 준공(2021. 12. 21.)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센터 구축사업(민간보조)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일자리정책실)

내 용

1. 업무개요

화순군은 국내 ○○ 개발 촉진 및 글로벌 ○○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센터 구축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재단법인 ○○센터(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2020. 10. 20. 보조금 28,300백만원(국비 21,300 도비 3,200 군비 3,800)을 교부 결정하였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2021. 7. 30.부터 2022. 5. 31.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추진 현황”과 같이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등			
○○센터 건립사업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연면적 4,335㎡	5,962	5,962	-	2021.07.30. ~ 2022.09.30.	주○○○○○ (○○○)	건설 공사
○○센터 건립공사 감리용역 (상주감리)	12개월	312	312	-	2021.10.26. ~ 2022.10.25.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	감리 용역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시행 2017. 9. 25.) V-[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 하고,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 준공계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센터 건립사업(건축, 토목, 기계, 전기)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도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주)○○○○○(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추가 시공한 공사 물량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설계도서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화순군(일자리정책실)과 보조사업자는 2022. 5. 31. 감사일 현재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46,389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3건		57,587		11,198	△ 46,389
1	토사운반 거리 정산 (10km, 20km → 3.1km)	2,350m³	25,444	2,350m³	7,996	△ 17,448
2	임목폐기물 부존재 정산	1102m³	27,551	-		△ 27,551
3	1층 장애인화장실 조적벽 높이 변경(5.85m → 4.08m)	51.48m²	4,592	35.9m²	3,202	△ 1,390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상주감리용역을 수행한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소속 감리인 ○○○은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46,389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46,389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1~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86%까지 적용함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²⁾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시행하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³⁾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를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2022. 5. 31. 감사일 현재 건설공사도급인(주)○○○○○이 [그림]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및 홈페이지 발급사실 조회 현황”과 같이 제출한 안전관리비 집행 증빙자료 중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등 2개사³⁾에서 5,351,500원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림]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및 홈페이지 발급사실 조회 현황

-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22. 3. / 4,041,400원 /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국세청 홈페이지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발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2)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도 시행(2015. 7. 1. 이후)

3)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외장판넬공사 하도급), ㈜○○기업(도장공사 하도급)

4) 주식회사 ○엔지니어링(4,041,400원), ㈜○○기업(1,310,100원)

-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22. 4. / 1,310,100원 / 주식회사 ○○기업)	국세청 홈페이지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발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안전관리비 5,351,500원을 부당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4. 하수관거 CCTV검사 및 수밀검사 일괄발주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공하수도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관리청은 하수관로 설계 시 시공이나 사업을 준공할 때 필요한 각종 검사를 필히 실시하도록 시방서에 언급하여야 하며, 관로의 CCTV검사 및 수밀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하수관거 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실시하되 「하수관거정비공사 CCTV검사 및 수밀검사(환경부, 하수67712-549(2003. 5. 22.)호)」에 하수관거 공사 시 CCTV검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함에 따라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하수관거 CCTV검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토록 통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하수관거 공사 시 하수관의 CCTV검사 및 수밀검사는 분리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2022. 5. 31. 감사일 현재 CCTV검사 및 수밀검사를 일괄 발주하여 CCTV 검사비 1,409천원 및 수밀검사비 417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하수관거 CCTV검사 및 수밀검사를 별도 발주하지 않고 도급 공사비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에 따라 시공자가 시행한 공사를 자신이 검사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46,369,000원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부당집행된 5,351,500원을 감액 조치하고,

환경부 공문에 따라 하수관거 CCTV 검사 및 수밀검사를 분리발주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여수시(하수도과)

내 용

1. 업무개요

여수시는 2019. 12. 17.부터 2022. 6. 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과 같이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 하수관로 정비공사	오수관로 16.6km	17,532	14,509	3,023	2020.07.17. ~ 2023.01.02.	○○토건(주) 외 1개사 (○○○)	건설 공사
○○○○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38개월	2,573	2,573	-	2019.12.17. ~ 2023.01.29.	(주)○○엔지니어링 외 2개사 (○○○)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자료 : 여수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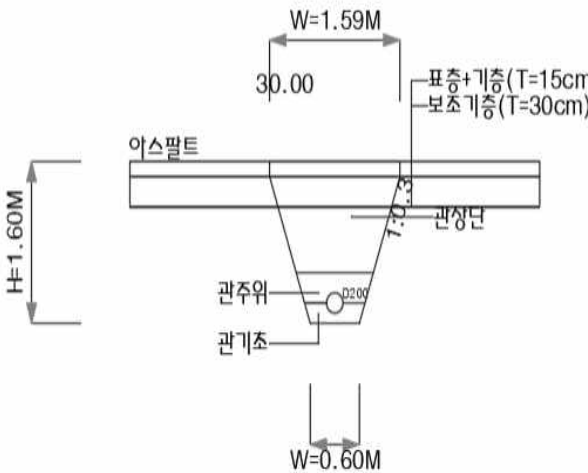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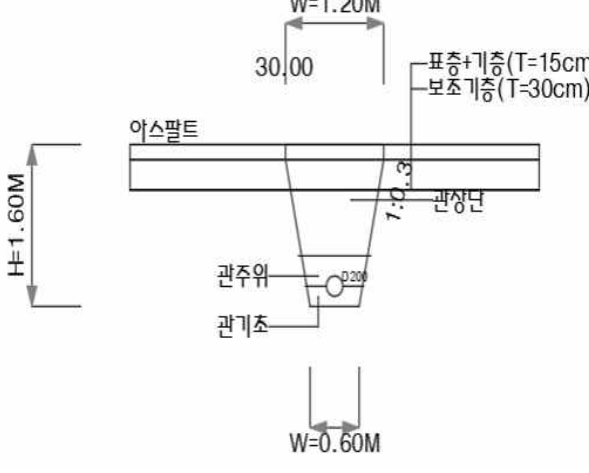
따라서 여수시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여수시(하수도과)는 2022. 6. 3. 감사일 현재 [그림] “도로 굴착 사진”과 같이 ○○아파트 인근 하수관로 설치 구간 1,302m의 도로 굴착 폭을 설계도서에 반영된 1.59m로 시공하지 않고 1.20m로 시공하여 공사비 10,555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림] 도로 굴착 사진

설계도서	실제 시공
	
점검사진	점검사진
-	-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엔지니어링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10,555천원을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도로 굴착 폭 축소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부설 물량이 변경되어 공사비 10,555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비 과다 계상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¹⁾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여수시는 품질시험계획 승인 시 품질관리비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통보하고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여수시(하수도과)는 2020. 8. 31. 품질시험계획을 [표 2] “품질관리비 현황”과 같이 승인 통보하면서 설계서와 품질시험계획서의 품질관리비가 상이한 데도 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있고, 품질관리비를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 공사비 77,012천원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품질관리비 현황

(단위 : 천원)

1) 전력비, 수도 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등

연 번	품질관리비	당 초(A) (설계서)	변 경(B) (품질시험계획서)	공사비 증·감 (B-A)
계	3건	459,456	382,444	△ 77,012
1	품질시험비	307,279	153,570	△ 153,709
2	품질관리활동비	107,336	150,592	43,256
3	품질검사비	3,073	-	△ 3,073
4	제경비(부가가치세 포함)	41,768	78,282	36,514

자료 : 여수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품질관리비 과다 계상으로 공사비 77,012천원이 설계 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4. 기성검사 미참석 및 입회확인서 미작성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2조 제11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성·준공검사 입회 등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02조 제6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수시 공사관리관은 기성검사에 입회하여 기성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 실시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여수시(하수도과) 공사관리관 ○○○ 주무관은 2021. 12. 14. 실시한 기성검사에 입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총 12개 점검 항목의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

성하여야 하는데도 기성검사에 입회하지 않고 입회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기성검사가 적절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여수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여수시장은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10,555,000원과 품질관리활동비 77,012,000원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시정)

②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여수시(체육지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여수시는 ○○○○ 전용구장에 대한 시민 숙원을 해소하고 해당 종목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2021. 1. 4.부터 2022. 6. 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건설공사 및 상주감리용역 추진 현황”과 같이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 건립공사(건축)	연면적 3,265㎡	5,608	3,743	1,865	2021.01.04. ~ 2022.07.31.	○○산업(주) (○○○)	건설 공사
○○ 건립공사(건축) 상주감리용역	10개월	185	185	-	2021.01.05. ~ 2022.08.19.	(주)○○건축사 사무소 (○○○)	감리 용역

자료 : 여수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계약된 공사

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수시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여수시(체육지원과)는 2022. 6. 3. 감사일 현재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20,389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5건		62,615		42,226	△ 20,389
1	조립식가설울타리(E.G.I.) 미시공	179.1m	10,496	125.9m	7,378	△ 3,118
2	규준틀 미시공	36개소	5,312	-	-	△ 5,312
3	콘크리트 보양(살수) 미실시	3,266㎡	2,980	-	-	△ 2,980
4	강관 조립말비계 설치 및 해체 미실시	15대	2,451	-	-	△ 2,451
5	터파기 여유폭 부족 정산	3,223㎡	41,376	2,707㎡	34,848	△ 6,528

자료 : 여수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상주감리용역을 수행한 (주)○○건축사사무소 소속 상주감리인 ○○○는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20,389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과다 계상된 공사비 20,389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하수관거 CCTV검사 및 수밀검사 일괄발주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공하수도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관리청은 하수관로 설계 시 시공이나 사업을 준공할 때 필요한 각종 검사를 필히 실시하도록 지방서에 언급하여야 하며, 관로의 CCTV검사 및 수밀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하수관거 공사 표준지방서」를 준수하여 실시하되 「하수관거정비공사 CCTV검사 및 수밀검사(환경부, 하수67712-549(2003. 5. 22.)호)」에 하수관거 공사 시 CCTV검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함에 따라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하수관거 CCTV검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토록 통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수시는 하수관거 공사 시 하수관의 CCTV검사 및 수밀검사는 분리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여수시(체육지원과)는 2022. 6. 3. 감사일 현재 CCTV검사 및 수밀검사를 일괄 발주하여 CCTV검사비 713천원, 수밀검사비 1,234천원 및 제비율 1,203천원 등 총 3,150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하수관거 CCTV검사 및 수밀검사를 별도 발주하지 않고 도급공사비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에 따라 시공자가 시행한 공사를 자신이 검사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여수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여수시장은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20,389,000원 감액 조치하고, 환경부 공문에 따라 하수 관거 CCTV 검사 및 수밀검사를 분리발주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관광실)

훈 계 대 상 자 해남군 ○○실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2021. 3. 16.부터 2022. 6. 8.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공원 조성공사	13,000㎡	3,342	2,816	526	2021.03.16. ~ 2022.06.09.	○○종합건설(주) (○○○)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보 ○○○은 2021. 9. 27.부터 2022. 6. 8. 감사일 현재 ○○실에
서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관광실)은 2022. 6. 8. 감사일 현재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21,468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3건		189,284		167,816	△ 21,468
1	보차도 경계석 설치 시 기초 콘크리트 합판 거푸집 한쪽 미설치	287m	26,804	287m	24,215	△ 2,589
2	우수공사시 집수정 기성품 사용 (현장 제작 및 설치 → 기성품 설치)	35개소	60,749	35개소	52,687	△ 8,062
3	녹지·재료분리 경계석 설치 시 기초 콘크리트 합판 거푸집 일부 미설치	1,631m	101,731	1,631m	90,914	△ 10,817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보차도 및 녹지·재료분리 경계석 설치 시 기초 콘크리트 합판 거푸집 일부 미설치 등으로 공사비 21,468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품질시험계획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초급품질관리 대상 공사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규모 20㎡ 이상의 시험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과 [별표 3]에 따르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최초교육 35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계속교육 35시간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건설사업자가 2021. 3. 16.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심사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승인 통보하고, 규모 20m² 이상의 시험실과 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였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관광실)은 2022. 6. 8. 감사일 현재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검토·확인하여 서면 승인 통보하지 않아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규모 20m² 이상의 시험실, 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배치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아 현장에 반입된 토사의 현장 밀도 시험, 레미콘 압축강도·슬럼프, 아스콘 밀도·두께 등의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 적합한 품질의 자재가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의 품질관리자는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최초교육 35시간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품질관리자로 선임되는 등 품질시험 업무를 태만히 하여 건설공사장에 대한 품질의 신뢰성을 저해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21,468,000원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해남군(산림녹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해남군은 노후한 숲속의 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¹⁾을 완료하고 2021. 12. 6. 부터 2022. 6. 8.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추진 현황”과 같이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 신축공사	8동	1,807	1,609	198	2021.12.06. ~ 2022.07.03.	○○○○개발 (주) (○○○)	건설 공사
○○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	1식	19	19	-	2021.12.07. ~ 2022.07.14.	○○건축사 사무소 (○○○)	감리 용역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

1) ○○건축사사무소 ○○○, 97,770천원, 2021. 3. 25. ~ 2021. 7. 2.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남군(산림녹지과)은 2022. 6. 8. 감사일 현재 [표 2] “건설공사 설계 변경 미 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8,804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2건	-	8,804	-	-	△ 8,804
1	기준틀 미시공	36개소	6,405	-	-	△ 6,405
2	폐기물처리비 정산	1식	2,399	-	-	△ 2,399

자료 : 해남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8,804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손케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성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나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별표 6]의 제3호에 따르면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건축물의 층수가 1층인 경우 1.5m 이상, 2층인 경우 2m 이상, 3층 이상인 경우 3m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하고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위 공사 토목 설계도서 중 A동 표준횡단면도에 따르면 전석쌓기 시 후면에 부직포를 설치하고 뒷채움잡석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는 A동(6동)에 대한 설계(배치계획) 시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기둥)면까지 1.5m 이상을 띄어서 설계하여야 했고 ○○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는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설계된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했으며, 해남군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변경을 지시하여야 했다.

또한 시공자(○○○○개발(주))는 전석쌓기 시 후면에 부직포를 설치하고 뒷채움잡석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공사감리자인 ○○○는 2022. 6. 8.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법령을

위반한 설계서를 변경하도록 지도하지 않았으며 시공자는 전석쌓기 시 후면에 부직포 및 뒷채움잡석을 시공하지 않고 전석쌓기를 완료하였다.

또한 공사감리자는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한 시공자에게 재시공 지시를 하지 않았고 해남군(산림녹지과)은 2022. 6. 8.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및 재시공 지시를 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숲속의 집 A동(6동)은 「건축법」 제41조에 따른 대지의 조성을 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4.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미적용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에서는 공공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19. 4. 11.부터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2019. 4.)」 제4장에 따르면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재래식 작업발판(강관비계)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강관 기본틀 조립 후 작업 발판·난간 설치	지지대, 작업발판 및 난간이 조립 가능한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일체형 거동
	

따라서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서 제시한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적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했고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는 일체형작업발판을 적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하여야 했으며 해남군은 일체형작업발판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공사감리자인 ○○○는 2022. 6. 8.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일체형작업발판으로 변경하도록 지도하지 않았으며, 해남군(산림녹지과)은 일반 재래식 작업발판(강관비계)으로 2,314천원을 사업에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건설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 및 공사감리자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8,804,000원 감액 조치하고, 「건축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전석쌓기 등은 재시공하며(시정)

② 앞으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시스템 비계를 적용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건축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하지 않은 설계·감리자(○○○

축사사무소 ○○○)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농어촌 생활용수(○○지구)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담양군(물순환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담양군은 2020. 6. 24.부터 20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과 같이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농어촌 생활용수(○○지구) 개발사업	관로 14.43km	5,161	2,170	2,991	2020.06.24. ~ 2022.08.02.	(주)○○ (○○○)	건설 공사
○○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3개월	1,114	1,114	-	2020.09.28. ~ 2022.08.16.	(주)○○ 외 1개사 (○○○)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자료 : 담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양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담양군(물순환사업소)은 2022. 6. 10. 감사일 현재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27,698천원을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3건	-	52,943	-	25,245	△ 27,698
1	송수관로 되메우기 및 다짐 시 램머 장비 미사용	1,948m³	28,248	1,948m³	7,040	△ 21,208
2	배수관로 제수변 보호통 설치 시 미송각재, 벽돌 미설치	22개소	8,096	22개소	6,182	△ 1,914
3	가설 사무실, 적치장 임대료 실비 정산 미 실시	1식	16,599	1식	12,023	△ 4,576

자료 : 담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27,698천원을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송수관로 되메우기 및 다짐 시 램머 장비 미사용 등으로 공사비 27,698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공사관리관 현장 기성·준공검사 미참석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2조 제11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성·준공검사 입회 등 주요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02조 제6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양군 공사관리관은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준공검사 실시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담양군(물순환사업소) 공사관리관¹⁾은 2020. 9. 28.부터 2022. 6. 9. 기동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한 기성·준공검사 2회²⁾ 중 1회는 참석을 하지 않아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회는 참석은 하였으나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공사관리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문제점 파악 등 발주청의 건설공사 총괄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담양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담양군수는

-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27,698,000원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시정)
- ②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2020.09.28.~2022.02.28.)

2) 1차분 : 기성 1차(2021. 06. 23.), 준공(2021. 12. 20.)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면 ○○○○○○센터 건립사업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담양군(자치행정과)

내 용

1. 업무개요

담양군은 다양한 공공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민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하여 2021. 7. 30.부터 20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추진 현황”과 같이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면 ○○○○○○센터 건립공사	연면적 819.72㎡	2,563	1,894	669	2021.07.30. ~ 2022.06.20.	○○건설주 (○○○)	건설 공사
○○면 ○○○○○○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1식	20	20	-	2021.09.14. ~ 2022.07.05.	건축사사무소 ○○ (○○○)	감리 용역

자료 : 담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양군은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담양군(자치행정과)은 2022. 6. 10. 감사일 현재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과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20,000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5건	-	23,300	-	3,300	△ 20,000
1	기준틀 미시공	18개소	3,000	-	-	△ 3,000
2	콘크리트 보양(살수) 미 실시	1,639㎡	1,400	-	-	△ 1,400
3	건축물 기초 터파기 후 되메우기 시 램머다짐 미시공	1,446㎡	9,800	1,446㎡	2,000	△ 7,800
4	지붕공사 자재 운반용 크레인(타이어) 중복 정산	24HR	2,900	-	-	△ 2,900
5	잔디 식재 변경 (평떼 → 줄떼)	167㎡	6,200	167㎡	1,300	△ 4,900

자료 : 담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20,000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도급인)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자, 감리자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주)(○○○)는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안전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1~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86%까지 적용함

사용내역을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확인을 받았어야 하고, 담양군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담양군(자치행정과)은 20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주)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건설(주)이 1회 기성²⁾을 청구하면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제출하도록 지도하지 않고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안전관리비(28,621천원)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담양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담양군수는

-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20,000,000원을 감액 조치하고,(시정)
-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의 확인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 2022-006호(2022. 4. 11.) 1회 기성계 제출의 건(기성액 1,140,700천원)